

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1. 7. 1.] [대통령령 제31672호, 2021. 5. 4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인증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245호, 2020. 4. 7. 공포, 2021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,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의 조사·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21년 5월 4일

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전해철

●대통령령 제31672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,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조의3(중전의 제1조의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제1항"을 "법 제10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1조의2(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(이하 "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

적용업소"라 한다)의 공정별·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

2.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,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

3.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)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·평가

부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